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977 발의연월일: 2025. 3. 17.

발 의 자: 박성훈・박충권・김소희

김위상 · 이헌승 · 한지아

고동진 · 김도읍 · 김기웅

서지영 · 김성원 · 임이자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・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129조의2).

법률 제 호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9조의2제1항 중 "운영하는"을 "지정·운영하는"으로, "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"를 "심사청구서, 심판청구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 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, 심사청구서, 심판청구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지정·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제출한 때에 해당 서류가 이 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제129조의2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29조의2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) ① 이의신청인, 심사 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관 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이의신청서, 심사청구서 또 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 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,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 청서,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 구서가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.

개 정 아

불복청구) ① -----지정・운영하는 ------- 심사청구 서. 심판청구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----

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, 심사청구서, 심판청구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관세청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지정 •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제출 한 때에 해당 서류가 이 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 원장에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.